

# 공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지원 제도

## 1. 세제 지원

가. 대도시에서 이전하여 입주하는 경우

- 이전준비단계 : 지방이전준비금의 설정
- 이 전 단 계 :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, 양도소득세(특별부가세) 면제
- 이 전 후 단 계 : 투자세액공제 또는 50% 일시상각증 선택 지방세(재산

세, 취득세, 등록세) 감면

나. 일반지역에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(신설포함)

- 지방세(취득세, 등록세, 2년간의 재산세) 면제

다. 수출자유지역(마산, 이리)의 외국인투자 및 합작입주 경우

- 입주인가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, 법인세, 재산세, 취득세 100% 면제

구 분	공 업 단 지	
	공 업 유 치 지 역	지 방공업개발장려지구
가. 지방이전준비금	○공장시설가액의 10%(3년간 30%)내에서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산입	좌 동
나. 투자세액공제 ○대도시내 1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 ○지방이전후 6개월내 대도시의 기존 공장폐쇄 ○대도시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후에도 계속	○투자세액공제 (국산기자재 10%, 외산기자재 6%)와 초년도 50% 일시상각증 택일	좌 동
다. 법인세·양도소득세(특별부가세) ○공장이전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구공장양도 ○이전지의 신설공장을 1년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 준공, 사업개시 ○구공장양도일 1년내 이전지의 기존공장을 취득, 사업개시	○공장대지·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(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전보상금의 법인세 면제)	좌 동
라. 재 산 세	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	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면제
마. 취 득 세	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5년내 면제	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내 면제
바. 등 록 세	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5년내 면제	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내 면제

-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배당금, 잉여금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, 법인세는 5년간 100% 면제
- 입주업체가 수입하는 자본재, 원료, 부분품 및 반제품 등의 관세 및 특별소비세는 전액 면제
- 입주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세는 5년간 전액 면제
- 입주기업체가 수출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

○ 공장건축자금의 용자 : 건축소요액의 70% (남동은 80%) 범위내에서 8년 이내(농범위내의 거치기간 포함)

나. 농공지구

○ 금융지원 (중소기업에 한함)

- 대출결정 : 중소기업진흥공단(일반공산품) 농수산물유통공사(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가공공장)

- 대출은행 :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강원은행, 충북은행, 충청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, 농수산물유통공사(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가공공장에 한함)

- 후취담보 취득(단, 공장준공시까지의 유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부대출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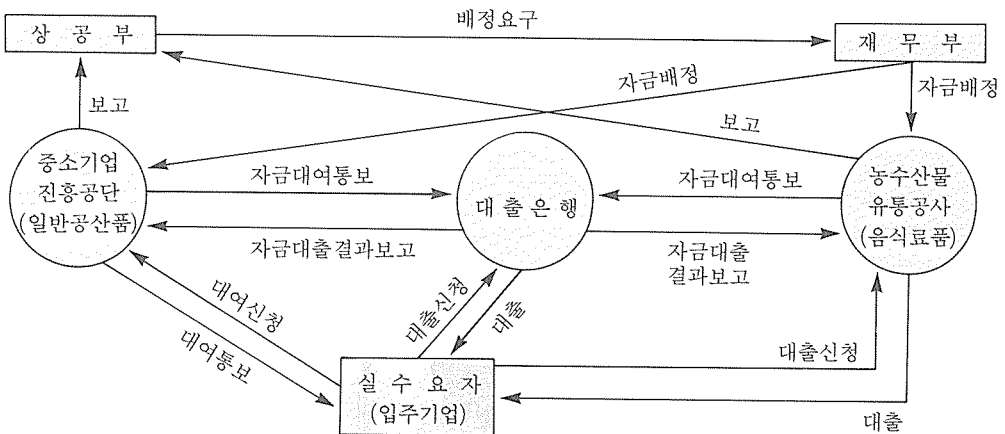
2. 금융지원

가. 반월공업단지, 인천남동공업단지

○ 부지매입자금의 용자 : 대지가격의 80% (남동은 50%) 범위내에서 8년 이내(농범위내의 거치기간 포함)

구 분	일 반 지 역			공 업 낙 후 지 역		
	금 리	용 자 한 도	용 자 기 간	금 리	용 자 한 도	용 자 기 간
시 설 자 금	9%	3억원 (소요의 90%)	3년거치 5년균분상환	8.5%	5억원 (소요의 90%)	3년거치 5년균분상환
운 전 자 금	9%	1억원 (소요의 70%)	1년거치 2년균분상환	8.5%	2억원 (소요의 70%)	1년거치 2년균분상환

- 지원절차



○ 세제지원

- 국세

- 소득세 · 법인세 감면 (3년간 100%,

향후 2년간 50%)

- 투자준비금 손비인정 (사업용 자산의 15%)

- 특별감가상각 100% 추가인정
- 대도시(수도권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 소재 이전공장 추가혜택
- 지방이전준비금의 손비산입 (공장시설 가액의 10% 범위내)
  - 공장양도차익(대지, 건물등) 및 이전보상금에 대하여 법인세, 소득세 면제
  -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
- 지방세
  - 취득세 · 등록세 면제
  - 재산세 감면(초년도 100%, 향후 3년간 50%)
- 행정지원(시장·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생략되는 인·허가사항)
  -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
  -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
  - 지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 지정의 해제
  -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의 인

- 가
    -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인가
    -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
    -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
    -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
    - 사도법(私道法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
    -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
    -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허가·확인의 동의
  - 판로지원
    - 정부수요물품 생산기업의 관납시 수의계약 가능(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)
  - 경영 및 기술지도
    -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경영 및 기술지도 제공
- 자료 : 「공업단지현황」1990, 상공부

